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구 미 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4.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반도체방산과)

구미국가산단 1단지 내 (주)방림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반도체 산업의 연구역량 집적화를 위한 기지로 마련, 지역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술 자립화를 통한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 위치 : 공단동 282 (주)방림 부지 일부

○ 대상 : 토지 33,000m²

○ 사업기간 : 2025년 ~

○ 총사업비 : 15,345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 부지매입비(감정평가) 15,345백만원

- 465,000원 × 33,000m² = 15,345백만원

○ 기준가격 : 7,540백만원(공시지가 228,500원 × 33,000m²)

○ 주요시설 :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등

- 향후추진계획
 - 기본계획수립 : '24. 9월
 - 공유재산심의 : '24. 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24. 10월
 - 부지매입 : '25. 상반기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 : '25. 하반기
- 기대효과
 - 반도체 산업의 거점 조성으로 기술 자립화 제고 및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	33,000	15,345
	1. 매입	1	33,000	15,345
	2. 교환 으로 취득			
	3. 기타 취득			
	토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사유	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33,000	15,345				
취득	토지	공단동 282	33,000	15,345	2025년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주)방림	매입

위 치 도

□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 소재지 : 공단동 282번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공단동 282 (주)방림 부지 일부 매입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간 : 2025년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세출	○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15,345				15,34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15,345					15,345
민간							
기타							
합계		15,345					15,345

5. 부대의견

- 지역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규모 국비가 지원되는 연구센터, 시험평가센터 등을 집적화할 곳이 필요한 실정임.

6. 작성자 : 반도체방산과 반도체정책팀 박정선(054-480-60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5,345	
부지매입	15,345	<input type="checkbox"/> 15,345백만원($465,000\text{원} \times 33,000\text{m}^2$)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안) - $465,000\text{원}/\text{m}^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7.~ 11. 생략
-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반도체방산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신 주 선)
	팀 장	김 은 화 (임 진 환)
	담 당 자	주 정 호 (480-5072) 박 정 선 (480-6032)